

사단법인 한국모금가협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모금가협회”(이하 “본회”)라하며 영문명칭은 “Korea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 모금분야(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시민사회, 국제개발 분야 등)의 모금종사자들이 모금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자선과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26에 두며 업무 편의상 주사무소 외의 공간에 별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모금가 및 모금활동의 표준 및 윤리성 확보
2. 건전한 기부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3. 도서, 출판 등 모금 지식 공유 및 확산 사업
4. 모금 분야의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사업
5.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모금가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모금 전문성 강화를 통한 비영리기관 역량강화 사업
7. 모금 분야의 국제교류사업
8.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하며 개인회원에는 정회원, 전문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을 둘 수 있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지정 양식)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회원규약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연간 사업 계획서 상의 회원 예우 규정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모금가 윤리서약 및 윤리강령 준수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4.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본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인(비상임)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13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③ 감사는 2인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임원은 제 20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회장을 겸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본회의 임원 및 제1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 및 대의원이 아닌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
나 의결권은 없다.

제16조의2(대의원) ① 대의원은 정회원과 전문회원 중 대의원 규정에 따라 모금 분
야별 일정 비율의 인원수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대의원은 정회원과 전문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 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정수, 자격 등의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대의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서면통지(이메일 포함) 및 공지(온라인 공지)
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
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1.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반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또한 타 임원에게 회의 출석대리권을 위임 할 수 있다.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회의록) 이사회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의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매년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보고 및 기부금 정보공개)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임으로 근무하는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근무현황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임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

제37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38조(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임이사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7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39조(분과위원회) ① 본회의 운영위원회 내에 협회의 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하는 분과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1. 멤버십위원회: 회원 자격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위원회: 본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교육개발, 연구, 실행에 관한 사항

3. 정책홍보위원회: 본회의 대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위원회: 본회의 목적과 관련한 해외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위원회: 본회의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다.

제8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 및 합병) 본회가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